



대한민국법원 QR코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369 준유사강간

피 고 인 김우진

검 사 손아지(기소), 김정화,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장재원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 2. 26. 20:30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피해자 김민지(가명, 여, 19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2024. 2. 27. 01: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5안길34 동경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김민지(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경모텔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식 결과)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 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자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나이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5. 3. 4.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방법, 범행 이후 피해자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를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그 수렁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장 판사 김우현 _____

 판사 차현우 _____

 판사 하정민 _____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본입니다.

202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이재영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